

제17장 분쟁해결

제1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7.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피소 당사국이란 제17.6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제17.2조 목적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3조 적용범위¹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 모든 분쟁의 회피와 해결, 그리고

¹ 비위반 제소는 이 협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2. 제17.5조를 조건으로, 이 장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양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제17.4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국제공법의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해석된다.
2. 이 협정에 통합된 WTO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패널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WTO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한다. 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²
3. 이 장에 따른 모든 통보, 요청 및 답변은 서면으로 한다.
4. 양 당사국은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도록 권장된다.
5.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6.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한 조치로 인하여 이 협정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혜택이 침해되고 있다고 여기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기능과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간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²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이 이 협정에 통합되지 않은 WTO 협정 규정에 대하여, 패널이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WTO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17.5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분쟁이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 협정상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분쟁해결절차는 그 밖의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제소 당사국은 제17.8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다른 국제 협정상의 분쟁해결 패널 또는 재판소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그에 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제소 당사국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이 특정한 분쟁에 이 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17.6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17.3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협의 요청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그러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협의 요청은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제시한다.
3. 피소 당사국은, 요청에 대한 자국의 접수를 제소 당사국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즉시 확인하고, 통보는 요청의 접수일을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이 이루어진 날이 요청의 접수일로 간주된다.
4. 피소 당사국은 요청에 대한 자국의 접수일 후 7일 내에 그 요청에 응답한다.

5. 피소 당사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요청 접수일 후 15일, 또는
 -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요청 접수일 후 30일
6. 양 당사국은 선의로 협의에 참여하고 협의를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 다. 협의를 위하여 협의 중인 사안에 책임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국의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구의 직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7.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8. 협의는 비밀로 하며 후속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7.7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

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절차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그러한 절차는 사안이 이 장에 따라 설치 또는 재소집된 패널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그러한 절차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7.8조 패널 설치 요청

1.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피소 당사국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 1) 제17.6조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 2) 제17.6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기간 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1)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 접수일 후 30일, 또는
- 2)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

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하고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하도록,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패널에 의하여 다루어질 제소의 사

실적 및 법적 근거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3. 피소 당사국은 요청에 대한 자국의 접수를 그 요청이 접수된 날을 표시하여 즉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요청이 이루어진 날이 그 요청의 접수일로 간주된다.
4.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17.9조에 따라 패널이 설치된다.

제17.9조

패널의 구성과 설치

1. 제17.8조에 따라 요청된 패널은 이 조에 따라 설치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에 따른 패널위원의 모든 임명과 후보자 지명은 제8항 및 제9항의 요건과 충분히 합치한다.
3. 제소 당사국은 제17.8조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 설치 요청 후 30일 내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피소 당사국은 패널 설치 요청이 제17.8조에 따라 접수된 후 30일 내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패널위원 임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4. 제3항에 따른 패널위원의 임명 후, 양 당사국은 패널 설치 요청이 제17.8조에 따라 이루어진 후 45일 내 패널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의 임명에 상호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패널 의장 임명을 위한 최대 3명의 후보자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5.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기간 내 어떠한 패널위원도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15일의 추가 기간 내 WTO 사무총장에게 나머지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후보자 명부는 WTO 사무총장에게도 제공되며 이는 요구된 임명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6. WTO 사무총장 자신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양 당사국에 통보하거나, 제5항에 언급된

요청일 후 30일 내 나머지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신속히 나머지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후보자 명부는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도 제공된다.

7. 패널의 설치일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이다.

8. 모든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 무역 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입증한다.

나.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나 WTO 사무국에서 직무를 수행했거나, 국제통상법이나 정책을 가르쳤거나 저술한, 또는 WTO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 정책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인을 포함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개인이다.

다.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라.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에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마. 어떠한 자격으로도 해당 사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양 당사국에 공개한다.

사.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 규칙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그리고

아. 양 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다.

9. 제8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패널 의장은

가.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며 당사국의 영역 안에 자신의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1)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2) 분쟁의 대상과 관련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추었다.

10. 패널위원은 정부의 대표 또는 어떠한 조직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양 당사국은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11.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한 경우,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정지된다.

12. 제17.14조 또는 제17.15조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되는 경우, 재소집된 패널은 실행 가능한 경우 원래의 패널과 동일한 패널위원을 가진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체 패널위원(들)은 원래의 패널위원(들)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의 패널위원(들)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17.10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은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사건의 사실관계

나. 양 당사국이 인용한 이 협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다. 다음의 여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지, 또는

2)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2. 패널은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일 후 20일 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 가진다.

“제17.8조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그러한 조사결과를 내며 판정을 하는 것”

3.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양 당사국의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

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협정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다. 다음의 여부에 대한 패널의 판정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지, 또는

2)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라. 나호 및 다호의 조사결과 및 판정의 이유

4. 제3항에 추가하여, 패널은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했을 수 있거나 자신의 위임사항에 규정되었을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한 그 밖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자신의 보고서에 포함한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조사결과 및 판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를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양 당사국의 서면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17.11조에 따라 획득한 정보 또는 기술적 조언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패널은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만 조사결과를 내고 판정 및 제안을 한다.
6. 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7. 패널은 양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8. 이 장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은 제17.14조에 따른 준수 검토와 제17.15조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 검토에 대하여 또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7.14조 및 제17.15조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7.11조

패널 절차

1. 이 장에 따라 설치되거나 재소집된 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장을 준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 규칙을 따른다.
2.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의 규정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17.14조 또는 제17.15조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 규칙으로부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대로 이 장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절차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자신의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3. 패널 절차는 패널 과정을 과도하게 지체시키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고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정표

4. 양 당사국과 협의 후, 패널은 패널의 설치 후 15일 내에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패널 과정은 설치일부터 양 당사국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반적으로 7개월의 기간을 넘지 않는다.

5. 유사하게, 제17.14조 또는 제17.15조에 따라 재소집된 준수 검토 패널은 재소집 후 15일 내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제17.14조에 명시된 기간을 고려하여 준수 검토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패널 절차

6. 패널은 컨센서스로 자신의 조사결과를 내고 판정을 한다. 다만, 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과반수 투표로 자신의 조사결과를 내고 판정을 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패널의 개별 구성원에 의하여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익명이다.

7. 패널 심의는 비밀이다. 양 당사국은 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8.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서면 입장

9. 각 당사국은 서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자국의 변론과 반박 변론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패널이 정한 일정표는 양 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을 위한 정확한 마감기한을 포함한다.

심리

10. 패널이 정한 일정표는 양 당사국이 사건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표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2회를 넘는 심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11. 심리 장소는 양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비밀유지

12. 패널에 제출하는 서면 입장은 비밀로 취급되나,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하다. 양 당사국과 패널은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서면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정보 및 기술적 조언

13. 양 당사국은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패널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응답한다.

14.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패널은 양 당사국의 의견을 구한다. 양 당사국이 패널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적 조언을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패널은 양 당사국에 자신이 제공받는 모든 정보 또는 기술적 조언 및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패널이 자신의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 정보 또는 기술적 조언을 고려하는 경우, 패널은 그 정보 또는 기술적 조언에 대

한 양 당사국의 의견 또한 고려한다.

패널 보고서

15. 패널은 패널 설치일 후 150일 내 양 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에서, 패널은 패널 설치일 후 90일 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16. 예외적인 경우, 패널이 패널 설치일 후 150일 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 90일 내에 자신의 잠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정 기간과 함께 지연되는 이유를 통보한다. 어떠한 지연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넘지 않는다.

17.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접수일 후 15일 내에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18. 패널의 잠정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19. 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이후, 당사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7.12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정지된 패널 절차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관련 기한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된 경우, 양 당사

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를 위한 권한은 실효된다.

2.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패널 의장에게 통보한다.

3. 패널은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17.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다음을 하기로 합의한다.

가. 패널이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조치를 합치시킨다. 또는

나.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다.

2. 양 당사국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 후 30일 내에,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이행에 대한 자국의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가. 피소 당사국이 제1항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7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는

나. 제1항의 의무를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고 자국이 여기는 합리적인 기간을 그러한 준수를 위하여 자국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한 표시와 함께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3. 피소 당사국이 제1항의 의무를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제2항나호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다.

4. 합리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양 당사국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 후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패널의장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의장과 다른 쪽 당사국에 제시되는 통보의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양 당사국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 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5. 제4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패널의장은 자신의 요청 접수일 후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정과 그러한 판정의 이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6. 지침으로서, 패널의장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1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 있다.

7. 피소 당사국이 자국이 제1항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지체 없이 제소 당사국에 그렇게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이 준수를 달성한 것으로 여기는 조치의 서술, 조치의 효력 발생일 그리고 조치의 문안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에 포함한다.

제17.14조

준수 검토

1. 양 당사국이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 합의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이러한 목적으로 재소집된

패널(이하 “준수 검토 패널” 이라 한다)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³ 제소 당사국은 준수 검토 패널이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사본을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제공한다.

2. 그러한 요청은 다음 중 이른 시기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가. 제17.13조에 따라 수립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또는

나. 제17.13조제7항에 따라, 자국이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는 피소 당사국의 제소 당사국에 대한 통보

3. 준수 검토 패널은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가.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소 당사국이 한 모든 조치의 사실적 측면, 그리고

나.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

4. 준수 검토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양 당사국의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

나.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사실관계와 이 협정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다.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판정, 그리고

³ 제17.6조에 따른 협의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요구되지 않는다.

라. 나호 및 다호의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이유

5. 준수 검토 패널은 제1항에 따라 재소집되도록 요청된 경우, 요청일 후 15일 내에 재소집된다. 준수 검토 패널은 가능한 경우 재소집일 후 90일 내에 자신의 중간 보고서를, 그 후 30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공한다. 준수 검토 패널이 관련 기간 내 어느 하나의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준수 검토 패널은 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추정 기간과 함께 지연되는 이유를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6. 준수 검토 패널의 재소집 요청일부터 준수 검토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까지의 기간은 150일을 넘지 않는다.

제17.15조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피소 당사국이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다만,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중 어느 것도 제17.13조제1항의 의무 준수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보상은 자발적이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협정과 합치한다.

2. 다음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가. 피소 당사국이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자 함을 제소 당사국에 통보했을 경우

나. 피소 당사국이 제17.13조제2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다.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까지 제17.13조제7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제17.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이 제17.14조에 따라 규명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이

가.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보상에 합의했으나, 피소 당사국이 그 합의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피소 당사국에 대한 적용을 정지하고자 함을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는 다음의 경우 행사되지 않는다.

가. 제9항에 따라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른 경우

5.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을 명시하고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관련 분야(들)를 표시한다.

6.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정한 동일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

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의 통보에는 그 기초가 되는 이유를 표시한다.

7.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은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고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으로 제한된다.

8.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피소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반대하거나, 자국이 보상의 조건을 준수했다고 여기거나, 제6항에 규정된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기 위하여 패널이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그 요청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 제공한다.

9. 제8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이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한 경우, 패널은 요청일 후 15일 내에 재소집된다. 재소집된 패널은 재소집일 후 45일 내에 양 당사국에 자신의 판정을 제공한다.

10. 재소집된 패널이 정지의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재소집된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자신이 여기는 적절한 정지의 수준을 판정한다. 재소집된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보상 합의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재소집된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제6항에 규정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항에 합치되게 그 원칙을 적용한다.

11. 제소 당사국은 재소집된 패널의 판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만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12.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제17.13조제1항의 의무가 준수되었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13. 이 조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가 행사된 경우, 피소 당사국이 제17.13조제7항에 따라 제17.13조제1항의 의무를 준수했다고 통보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국이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⁴ 요청 당사국은 요청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14. 제13항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된 경우, 제17.14조제3항부터 제17.14조제6항까지가 적용된다.

15. 제13항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제17.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신속하게 종료한다.

제17.16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패널위원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장의 비용과 패널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7.17조

⁴ 패널이 피소 당사국의 준수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항에 따라 재소집된 경우, 패널은 요청에 따라, 피소 당사국이 한 이행 조치에 대한 자신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기존의 양허 정지의 수준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또한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위한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내에 이 연락처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장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모든 통보, 요청, 답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관련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다. 관련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은 지정된 연락처(들)를 통하여 그러한 문서의 접수 확인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17.18조

언어

1. 이 장에 따른 모든 절차는 영어로 수행된다.
2. 이 장에 따른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를 영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한다.